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인

2018년 2월 9일

국무총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

●대통령령 제28635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2호나목 중 "8미터"를 "10미터"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)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,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.

- 1. 국토교통부장관: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
- 2. 시·도지사: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 무워
- 3. 시장·군수·구청장: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청원경찰. 이 경우 배치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 - 가.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) 및 부산권(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를 말한다):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
 - 나. 가목 외의 지역: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

제41조의2제2항 중 "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"를 "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"로 한다.

별표 1 제2호파목가) 중 "공급시설"을 "공급시설,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"로 한다.

별표 1 제3호아목가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,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 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 만인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. 별표 1 제3호저목을 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저목 및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저.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

가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 은 3.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.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.

보

- 나)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 구해야 한다.
- 대시설
- 처. 청소차 공영차고지 및 부 가)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또는 고가철도의 노면 밑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
 - 나) 부대시설은 사무실, 차고설비, 차고부대시설, 휴게실 및 대 기실만 해당한다.

별표 1 제5호가목1)라)③ 중 "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"를 "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로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| 이 개정(법률 제14846호, 2017. 8. 9. 공포, 2018. 2. 10. 시행)됨에 따라, 국토교통부장관, 시 •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, 서울 특별시 등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등 부산권의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 로미터당 1명 이상, 그 외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의 인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.

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훼손행위의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의 촉 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버스 차고지 부대시설에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령 리 총

◉총리령 제1441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2018년 2월 9일

국 무 총 리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